

운 영 위 원 회  
소 관

##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
----------	----

발의년월일 : 2022. 8. .

발 의 자 : 이호건 의원 외 13명

임태근, 정기혁, 박영섭, 오중균,  
경수현, 임현주, 정해숙, 소형준,  
이용진, 고영옥, 권영애, 강수진,  
김경이

##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성북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제4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
- 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제6조)
-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 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8조)
-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9조)
- 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0조)
- 사.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3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을 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그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성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인에게 하는 처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조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고위공직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조치 절차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하는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

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의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에게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원수행사인으로서 공무원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북구의회의원: 「지방자치법」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결정된 징계
2. 제1호 외의 공직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사적이해관계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유형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작성방법

1. 신고·신청인의 “담당 업무” 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2.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의 “사적이해관계”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의 “관련 직무”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직무관련자 유형” 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그 밖의 사유( )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작성방법

1. 업무 담당 공직자의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그 밖의 조치( )		
	[ ] 해당 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 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그 밖의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 유의사항

조치대상의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input type="checkbox"/> 직무 대리자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재배정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조치( )		
신청 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작성방법

1. 신청인의 “담당 업무” 는 신청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2. 직무관련자의 “관련 직무”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직무관련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직무관련자의 “직무관련자 유형” 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에 해당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 법인·단체 등에 재직 한 경우

명칭(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그 밖의 사항

업체명(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연락처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직무관련자 유형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 유가증권 거래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 그 밖의 재산상 거래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 공사 계약 [ ] 그 밖의 계약	거래금액	거래원인
그 밖에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작성방법

1. 거래자의 신고인과의 관계 중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유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3. 거래상대방의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위의 “직무관련자 유형”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 사항

가족 여부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예외 해당 여부	위 확인 사항 가운데 “예” 를 선택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라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그 밖의 계약
	수의계약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연락처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대상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유형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접촉 일시	접촉 사유	
	접촉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 부담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그 밖의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작성방법

- 직무관련자(퇴직자)의 “직무관련자 유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직무관련자(퇴직자)의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위의 “직무관련자 유형”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신고처리과정에서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소재지
	[ ]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개인의 이름·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 경위 및 위반행위	신고 경위 및 이유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위반행위의 내용		
증거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신고자	성명	연락처	
신고 정보 (이첩 또는 송부된 신고만 기재)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신고 내용			
조사 결과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		
조사 결과의 이유			
그 밖의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신고자	성명	연락처	
신고 정보 (이첩 또는 송부된 신고만 기재)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신고 내용			
종결처리 사유	<p>[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p> <p>[ ]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p> <p>[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p> <p>[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p> <p>[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p> <p>[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p>		
그 밖의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의 회 의 장

직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소재지
	[ ]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개인의 이름·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 내용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위반행위의 내용		
통보받은 조치 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내용	신청 경위		
	이유		
증거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